



[시행 2020. 10. 13] [교육부령 제220호, 2020. 10. 13, 일부개정]

교육부 (학술진흥과) 044-203-6871

- 1 ( )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1.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 3 (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영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4 ( 가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 ( 가 )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6 ( )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6 2(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